

UNIST 산학협력관

공유오피스 신규입주기업 모집공고

[UNIST 산학기획팀 2026.6.10.]

UNIST에서는 유망한 연구소기업 지원 및 지역기업들의 기업부설연구소, 신규창업 등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본교 연구자들과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기업들의 R&D기능 강화를 위하여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, 입주 희망 기업에서는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신청대상

- ① 원내 입주를 희망하는 연구소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설립 예정 기업 (예비창업자, 창업초기기업(법인))

「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의 3에 의한 연구소기업*, 연구소기업 설립 중인 예정기업**중 성장가능성이 높고 공간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업

- ② 연구소기업(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)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지원기업

※ 창업지원기업이란 UNIST 창업공간 운영에 관한 지침 제33조3항에 따른 다음의 단체 및 기업을 말한다.

- 가.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
- 나. 창업기획자(엑셀러레이터)
- 다.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
- 라. 중소기업상담회사
- 마. 그 밖에 창업지원 기관

- ③ 울산 울주군 소재 기업 중 특화분야* 기업 또는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 기업

※ 특화분야: 첨단전지핵심소재(고성능 이차전지, 수소연료전지, 태양전지 등), 경량 소재 및 스마트부품(미래형 전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) 등

- ④ 산학협력 목적의 UNIST 기술이전 창업기업
- ⑤ 창업지원기업, 자회사 등 본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
- ⑥ 본원에 현금 또는 주식 기부 등 기여도가 높고, 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우수 성과를 입증한 기
- ⑦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‘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’의 입주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자

* 강소특구 입주 대상 세부 내용 [참고 1] 참조

※ ①~⑥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, ⑦(강소특구 입주 요건) 충족 필요

※ 입주 평가를 통해 입주 신청기업의 적합 여부를 판단함

2. 입주기간

-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
 - ※ 입주기간 만료 후 내부 심사에 따라 1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최대 5년의 입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
 - ※ 입주 연장을 원할 경우 계약 만료일 30일 이전에 연장신청 필수
- 기업 설립을 목적으로 신청한 기업(창업자)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업 등록되어야 함
- 연구소기업 설립을 목적으로 신청한 기업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

3.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모집 공간

임대대상	면적(㎡)	수용인원(명)	제공집기류	기타
총 1개(Desk)	3.0/Desk	1명/Desk	책상, 테이블(1세트)	- 공용 복합기 설치됨 - 공용 회의실 제공 - 무선인터넷 제공

4. 임대료

- 관리비 포함 월 12,300원(/㎡)
- 입주 전 1년치 임대료 선납 必

<임대료 산정기준>

보증금	임대료	비고
없음	월 12,300원/㎡ (12,300원/㎡ x 3㎡ x 12개월 = 연442,800원)	* 관리비 2,300원/㎡ 포함 * 유틸리티(광수도) 등 임대료 포함

5. 입주신청 및 접수

- 1) 모집기간: 상시모집
- 2) 접수방법: 담당자 이메일 (industry@unist.ac.kr)
- 3) 평가방법: 서면평가
 - 평가항목: 창업자 핵심역량, 창업기업의 성장가능성, 창업기업의 본원 기여도, 창업보육실의 필요성 등

4) 입주 신청 구비서류

번호	제출서류	형식	부수	비고
1	(필수) 입주신청서	PDF	1부	
2	(필수) 사업계획서		1부	
3	(필수) 법인등기부등본		1부	*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* 예비창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(추후 기업 설립 시 추가제출)
4	(필수) 인감증명서		1부	* 예비창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제출 (추후 기업 설립시 추가 제출)
5	(필수) 사업자등록증		1부	*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* 예비창업자의 경우 추후 기업 설립 시 추가 제출
6	(필수) 전년도 재무제표			
7	(필수) 사용계획 및 이행서약서		1부	
8	(필수) 개인정보 수집·이용제공 동의서		1부	
9	(필수)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		1부	* 서류제출일 당일 발급분
10	(해당시)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/창업기획자 증빙		1부	*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등록증 또는 등록요건 충족 증빙서류
11	(해당시) 투자실적 증빙		1부	

5) 재단심사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주 승인 신청

- UNIST 입주심사 통과 기업에 한해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주 승인 신청절차 별도 안내(입주예정기업에서 심사 신청)
- 강소특구 입주관리 대상 여부 등 검토
- 심사 소요기간: 5일 내외

6) 계약체결 및 입주

- 매월 1일자 계약체결 및 입주
-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주요건 미통과시 입주 불가
- * 입주절차 [참고 2] 참조
- * 입주절차는 내부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7.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
- 실제 입주공간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출한 입주신청서 상의 신청 내용(면적, 전용공간 등)과 달라질 수 있으며, 입주공간의 공실 현황에 따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
- 입주계약체결 이후 입주확인 및 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퇴거될 수 있음

※ 문의 : UNIST 산학기획팀 (industry@unist.ac.kr / Tel: 052-217-1583)

[참고 1]

강소특구 입주관리 대상

(관련: 특구법 제 37조, 시행령 제32조, 33조, 시행규칙 제9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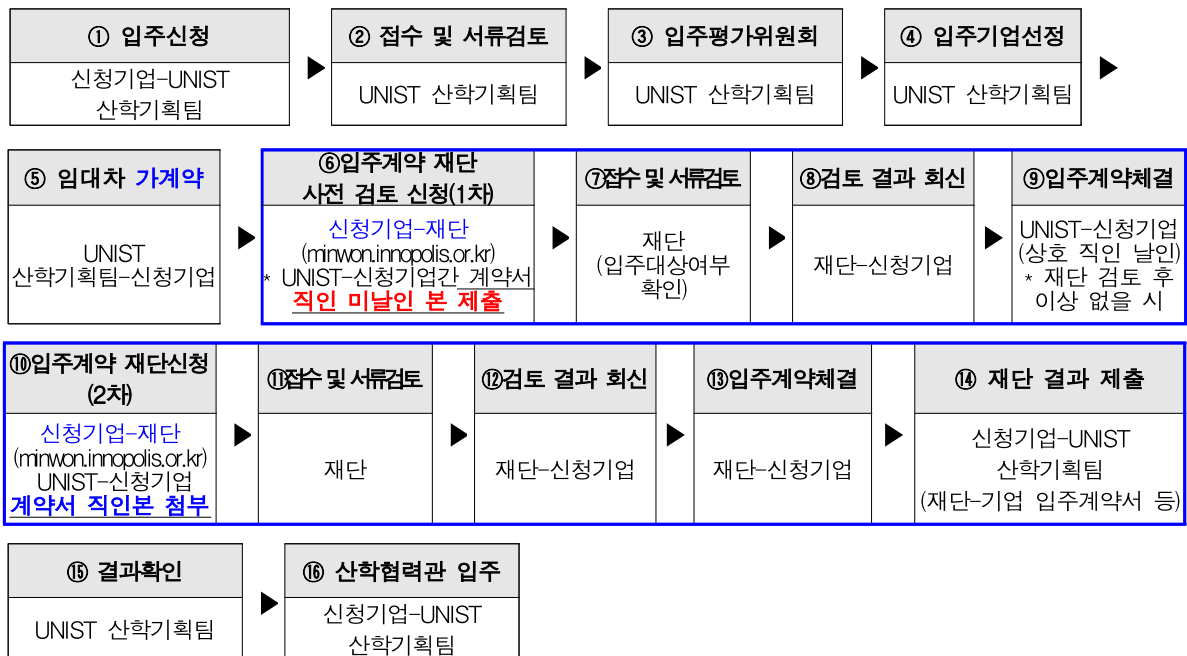
-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정부출연연구기관
 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」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
 - 대학, 국공립연구기관
 -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 -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한국세라믹기술원,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
 -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
 - 과학기술분야의 관람 및 전시기관
 - 위 사항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기관
 - 연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
 -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자 또는 그 창업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자
 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4조 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 -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 -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
 -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·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※ 부대시설(편의점, 카페 등)의 경우,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증진 및 기관의 운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입주하는 자로 분류하지 않으며, 체육시설이나 기숙사의 경우,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·관리를 위해 입주하는 자로 분류됨

[참고 2]

UNIST 산학협력관 공간 입주절차

UNIST가 울산 울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내 입주를 위해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주 심사 절차 추가(⑥~⑭) 진행

* 관련: 특구법 제 37조, 시행령 제32조, 33조, 시행규칙 제9조



*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주승인 절차 미통과 시 UNIST 산학협력관 입주 불가